

정 관

제정 2014.05.07
개정 2015.03.27
개정 2016.01.11
개정 2016.08.19
개정 2017.03.31
개정 2017.08.09
개정 2017.11.08
개정 2018.03.22
개정 2019.03.29
개정 2021.02.15
개정 2021.05.21



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CoAsia Optics Corp. 라 표기한다.
[2021.02.15 개정]

제2조(목적) [2021.02.15 개정]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스마트폰용 렌즈 제조 판매
2. 스마트폰 부품 제조 판매
3. 정밀광학부품 개발용역, 제조 및 판매
4. 광학기기 개발용역, 제조 및 판매업
5. 가상현실(VR). 영상제작시스템 제조 및 개발, 판매
6. 자동차 전장 및 친환경 소재산업 부품제조, 가공판매 및 수출입업
7. 의료용 렌즈 제조 및 판매업
8. 수출입업
9. 전자상거래업
10.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도소매 및 무역업
11.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12. 시스템통합 판매사업
13. 금형도소매업
14.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15.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6. 초정밀 광학 금형 제조업
17. 정밀 사출 금형 제조업
18. 기타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2021.05.21 개정]

- ① 당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에 둔다.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당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oasiaoptic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2021.02.15 개정]

제2장 주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2021.02.15 개정]

제6조(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0원으로 한다. [2021.02.15 개정]

제7조(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 시에 18,764,888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삭제]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02.15 개정]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식으로 한다.
- ③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종류주식의 구분 없이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로 한다.

제9조의2 [2021.02.15 삭제]

제9조의3 [2021.02.15 삭제]

제9조의4 [2021.02.15 삭제]

제9조의5 [2021.02.15 삭제]

제9조의6 [2021.02.15 삭제]

제9조의7 [2021.02.15 삭제]

제9조의8 [2021.02.15 삭제]

제9조의9 [2021.02.15 삭제]

제9조의10 [2021.02.15 삭제]

제10조(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1.02.15 개정]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2021.02.15 개정]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021.02.15 개정]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기타 사업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21.02.15 개정]

③ [2021.02.15 삭제]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 및 각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021.02.15 개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021.02.15 개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2021.02.15 개정]

-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2021.02.15 개정]

-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 또는 제휴 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경영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 의직전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02.15 개정]

⑤ [2021.02.15 삭제]

5. [2021.02.15 삭제]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 의직전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⑥ [2021.02.15 삭제]

제18조2(사채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3(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9조(소집 및 통지)

①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2021.02.15 개정]

②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소집한다.

③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 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21.02.15 신설]

⑦ 회사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02.15 신설]

제20조(의장 및 권한)

① 대표이사(사장)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사장) 유고시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02.15 개정]

- ② 의장은 주주총회를 주재한다.
- ③ 의장은 회의를 주재함에 있어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 정지,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주주총회 결의방법) [2021.03.29 개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권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2021.02.15 개정]

제23조(의결권)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의2(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2021.02.15 신설]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3조의3(의결권 불통일 행사) [2021.02.15 신설]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주주총회 의사록) [2021.02.15 개정]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임원과 이사회

제25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② 당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한다.

제26조(이사의 선임)

- ① 당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제21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감사의 선임·해임) [2021.02.15 개정]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2021.02.15 개정]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021.02.15 개정]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2021.03.29 개정]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021.02.15 신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21.02.15 신설]

제28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하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8조의2(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9조의2(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21.02.15 신설]

제31조(이사회회의 결의)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2조(이사회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진행이사)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사장)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2021.02.15 개정]
- ② [2021.02.15 삭제]
- ③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한다. [2021.02.15 개정]

제34조(업무집행)

-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2021.02.15 개정]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1.02.15 개정]

제34조의2(이사의 의무) [2021.02.15 신설]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3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담당한다.

제36조(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6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2021.02.15 신설]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3(이사회 내 위원회) [2021. 2. 15.신설]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0조 내지 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위원회는 해당 결의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 2.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원 또는 이사를 퇴임시키는 행위
 - 3. 주주들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을 주주들에게 제출하는 행위
 - 4. 이사회가 사전에 채택한 결의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제6장 계산

제37조(영업년도)

당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재무재표 등의 작성비치) [2021.02.15 개정]

-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2021.02.15 삭제]

2. [2021.02.15 삭제]

3. [2021.02.15 삭제]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익금의 처분) [2021.02.15 개정]

회사는 매영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1조(이익배당) [2021.02.15 개정]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된다.

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41조의1(분기배당) [2021.02.15 개정]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 ⑤ 제8조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2014년 05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5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6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6년 0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7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7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7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은 2018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3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시행일은 제6조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한다.

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점이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